

## 지역사회와의 관계

###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해당 주 및 연방법과 규정을 준수할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할 때마다 조기에 불만 사항을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5 CCR 4600-4670 및 관련 행정 규정에 명시된 불만 처리 절차의 일관된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 UCP 에 적용되는 불만 제기 사항들 :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UCP)는 다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1.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교육법 46015)
2. 성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법 8500-8538, 52334.7, 52500-52617)
3.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교육법 8482-8484.65)
4. 농업 경력 기술 교육 (교육법 52460-52462)
5. 직업 기술과 기술 교육 및 직업 기술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교육법 52300-52462)
6. 보육 및 발육 프로그램(교육법 8200-8488)
7. 보상 교육 (교육법 54400)
8. 통합 범주 별 지원 프로그램 (교육법 33315; 34 CFR 299.10-299.12)
9. 교육적 내용이 없는 과정 기간 (교육법 51228.1-51228.3)
10. 주 재정 지원에 의해 직접 자금이 지원되거나 주 재정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한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민족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민족 그룹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부모 신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의학적 상태, 성,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유전학적 정보 또는 교육법 200 또는 220, 정부법 11135 또는 형법 422.55 에서 식별된 기타 특성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5 CCR 4610)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11. 위탁 보호를 받는 학생, 노숙자 학생, 군인 가족의 학생, 이전에 청소년 법원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졸업 요건 (교육법 48645.7,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12. 모든 학생을 위한 성공법 (교육법 52059.5; 20 USC 6301 et seq.)
13. 지방 콘트를 및 책무안 (교육법 52075)
14. 이민자 교육 (교육법 54440-54445)
15. 체육 수업 시간 (분 수) (교육법 51210, 51222, 51223)
16. 학생 비용 (교육법 49010-49013)
17. 수유 중인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교육법 222)
18.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교육법 52300-52334.7)
19. 지정된 연방 및/또는 주 정부의 범주 별 기금에 대한 통합 신청에 필요한 학생 성취에 관한 학교 계획 (교육법 64001)
20. 학교 안전 계획 (교육법 32280-32289)
21. 지정된 연방 및/또는 주 정부의 범주 별 기금에 대한 통합 신청에 필요한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법 65000)
22.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 (교육법 8207-8225)
23. 면허 면제 프로그램의 주립 유아원 보건 및 안전 문제 (교육법 8212)
24. 불만 제기인 또는 불만 처리 과정에서의 다른 참여자 또는 본 방침의 적용을 받는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신고하기 위해 행동한 사람에게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

## 지역사회와의 관계

###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25. 공교육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교육 프로그램.

교육위원회는 주장의 본질에 따라 대안적 분쟁 해결 (ADR)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중재와 같은 ADR 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포함되고 성인이 포함되지 않은 불만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는 성폭력이 관련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요되는 합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중재가 제안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ADR의 사용이 주 및 연방 법 및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구는 모든 불만 제기인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불만 조사 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기밀 사항은 법으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괴롭힘, 협박, 또는 왕따)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제기에 대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인 및/또는 불만 제기 주체가 해당 불만 제기인과 다른 경우, 적절할 때 그리고 불만 처리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는 한, 관련인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UCP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장이 UCP 불만 제기에 포함된 경우, 교육구는 비-UCP 주장을 해당 직원 또는 기관에 회부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구의 UCP를 통해 UCP-관련 주장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에 명시된 단계와 일정 그리고 수반되는 행정 규칙을 포함하여 UCP와 관련된 현재의 법률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구 직원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조사 동안에 취한 조치와 5CCR 4631 및 4633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 불만 제기 및 후속 관련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비-UCP (UCP에 해당되지 않는) 불만 제기

다음 불만 제기는 교육구의 UCP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지정된 기관이나 대체 절차를 통해 조사 및 해결되어야 한다: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 제기는 카운티 사회 복지부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보호 서비스 부서 (Protective Services Division) 및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4611)
2.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의한 보건 및 안전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제기는 허가된 시설의 경우, 사회 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로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4611)

### 지역사회와의 관계

####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3. 학생이 해당 교육구가 상황 및 상대방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34 CFR 3 방침 참조 면책 조항: 106.30 에 정의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불만 제기는 AR 5145.71 - 타이틀 IX 성희롱 불만 제기 절차에 명시된 대로 34 CFR 106.44-106.45 에 따라 채택된 연방 타이틀 IX 불만 제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4.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부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AR 4030 - 고용에서의 비차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 의해 조사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5. 특수 교육과 관련된 주 또는 연방법 또는 규정의 위반, 적절한 무상 공교육 (FAPE) 제공과 관련된 합의 동의안, 교육구가 적법 절차 청문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 또는 교육구의 FAPE 제공을 방해하는 물리적 안전 문제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 제기는 AR6159.1 -특수 교육에 대한 절차적 보호 조치 및 불만 사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제출되어야 한다. (5 CCR 3200-3205)
6. 급식 계산 및 청구, 환급 가능한 급식, 어린이 또는 성인의 자격 또는 카페테리아 기금의 사용 및 허용 가능한 비용에 관한 법률에 교육구의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 제기는 BP 3555-영양 프로그램 준수에 따라 CDE 에 제출하거나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15580-15584)
7.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교육구의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의 모든 차별 주장은 BP 3555-영양 프로그램 준수에 따라 미국 농무부에 제출하거나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15582)
8. 교과서 또는 교육 자료의 충분성,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 또는 긴급 시설의 상태 또는 교사 결원 및 오배치와 관련된 모든 불만 제기는 AR 1312.4 -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해결되어야 한다. (교육법 35186)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법적 참조:                   교육법 섹션 200-262.4; 8200-8498; 8500-8538; 18100-18203; 32221.5; 32280-32289; 35186; 46015; 48853-48853.5; 48985; 49010-49014; 49060-49079; 49069.5; 49490-49590; 49701; 51210; 51222; 51223; 51225.1-51225.2; 51226-51226.1; 51228.1-51228.3; 52059.5; 52060-52077, 52075; 52300-52462; 52500-52616.24; 54000; 54445; 54460-54529; 59000-59300; 64000-64001; 65000-65001  
정부법 섹션 11135; 12900-12996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596.792; 1596.7925  
형법 섹션 422.55; 422.6  
규정법, 타이틀 2, 섹션 11023  
규정법, 타이틀 5, 섹션 3200-3205; 4600-4670; 4680-4687; 4690-4694; 4900-4965; 15580-15584  
미합중국법, 타이틀 20, 섹션 1221; 1232g; 1681-1688; 6301-6576; 6801-7014  
미합중국법, 타이틀 29, 섹션 794  
미합중국법, 타이틀, 타이틀 42, 섹션 2000d-2000e-17; 2000h-2-2000h-6; 6101-6107; 11431-11435; 12101-12213  
연방 규정법, 타이틀 28, 섹션 35.107  
연방 규정법, 타이틀 34, 섹션 99.1-99.67; 100.3; 104.7; 106.1-106.82; 106.8; 106.9; 110.25

방침 채택:                   11/17/1992

방침 개정:                   12/17/2002; 11/03/2010; 03/11/2014; 04/15/2014; 05/06/2014; 04/05/2016;  
10/18/2016; 08/15/2017; 02/06/2018; 05/01/2018; 06/04/2019; 07/14/2020;  
02/16/2021; 04/05/2022

(이전의 BP 1312)